
2024-2026 KOICA-NGO봉사단 [분야 : 기후환경] 모집 안내문

2024. 12. 30.

1 모집 개요

(사)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, (사)환경교육센터 한국국제협력단(KOICA)위탁 사업으로 KOICA-NGO 봉사단을 모집합니다. 우리 봉사단프로그램은 몽골, 우즈베키스탄, 탄자니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환경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기획되었으며, 지속가능한 미래를 고민하고, 함께 대안을 모색할 미래환경의 주인공이자 희망이 될 미래의 환경리더인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

- 모집인원 : 30명 (파견 기관별 1~3명이내 팀제운영)
- 파견국 : 3개국 (몽골, 우즈베키스탄, 탄자니아)
- 활동기간 : 1년 (1개월 국내 원격활동 + 11개월 해외 파견)
- 파견시기 : 2025년 3월중 원격활동 실시, 4월 중 순차적으로 현지파견 예정
- 모집분야 : 환경, 행정, 교육, 홍보 등
 - * 상기 직종, 전공에 상관없이 기후환경 활동경험이 있거나 다양한 봉사활동 분야의 재능과 전문성이 있다면 지원 가능

활동내용

구분	내용
공통직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SDGs 13(기후환경) 달성을 위한 기획 활동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개인 혹은 팀별 활동으로 기후환경 관련 교육 실시- 국내외 활동 홍보 및 SNS 운영 및 관리- 기후환경 관련 교육 자료제작 및 번역- 기후환경 관련 현장사업 기획 및 운영
현장실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파견 NGO관련 활동 지원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파견NGO별 고유업무는 상이함.

- 지원내용 : 입출국 경비(항공료 등), 해외 여행자 보험, 생활비, 주거비, 현지정착비, 출/귀국준비금, 정착금, 귀국 건강검진, 공통직무에 필요한 교육 등

2 지원자격

- 봉사정신이 투철한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
 - 지원서 접수 마감일인 2024.12.27 기준 만 19세 이상인 자(2005.12.27. 이전 출생자)
 - 해외봉사활동을 원활하게 수행 가능한 자
 - 파견국이 요청하는 자격 기준(자격, 경력 등)에 해당하는 자
 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f결격사유)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
 - 남자는 군 복무를 필했거나 면제된 자
 - 파견 전 국내 교육이 전 일정 참석이 가능한 자
 -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 - 법령에 의한 여권 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
 - 파견 국가별 적정 활동비자 발급이 가능한 자
- ※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에 따라 65세 이상 연장자 및 12~64세 면역저하자·감염취약시설 구성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하며, 파견 국가별 출국 요건에 따라 추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필수 요구될 수 있음
- ※ 지원한 봉사단의 선발 전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, 동일한 위탁형 봉사단 (NGO봉사단, 청년중기봉사단 등)은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. 단, KOICA 일반 봉사단, 프로젝트 봉사단, KOICA 자문단 등은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.
- 직종별 우대 사항
 - 환경분야: 기후환경 관련 전공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자
 - 교육분야 : 교육관련 전공 혹은 전공무관. 학생,주민 대상으로 교육활동 경험이 있는자
 - 행정분야 : 지역사회 커뮤니티 운영 경험, 리더, 통역, 등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거나 관련 전공자. 컴퓨터(엑셀,워드, 파워포인트등)작업가능자
 - 홍보: 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동영상 편집, 콘텐츠 제작, 홍보 채널 운영 등 경험이 있거나 관련 전공자

○ 아래 사항에 해당 시 가산점 부여

- 교육, 공공행정, 국제개발, 예체능, 디지털 활용 등 활동 관련 자격증
- 활동국 현지 활동 경험, 봉사단 활동 경험
- 현지어 가능(6개월 이상 파견국 경력자), 영어 공인점수
- 사회배려층

구 분		가산점		비고
		서류	면접	
사회적 배려층 ※ 가점 상한 없음	차상위계층	5점	5점	참고 1 증빙제출
	장애인	5점	5점	
	저소득층(국민기초생활수급자)	5점	5점	
	다문화가족	5점	5점	
	한부모가족	5점	5점	
	6개월이상 장기실직자	5점	5점	
	여성가장	5점	5점	
	보훈보상대상자	5점	5점	
	국가유공자(자녀)	5점	5점	
	자립준비청년(舊보호종료아동)	5점	5점	
외국어 ※ 최대 5점 이내 가점인정, 중복가점도 5점 초과 불가 (예시) 영어 3점 + 러시아어 3점 해당 시, 총점 5점 가점부여 ※ 성적 유효기간: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국내 정기 시험 성적 ※ 사유를 불문하고 진위여부 검증이 되지 않는 경우 인정불가	영어 ※ 인정: TOEIC, New TEPS, TOEFL/IBT, G-TELP(level 2)	3점	-	TOEIC 830~920점 New TEPS 324~393점 TOEFL/IBT 95~107점 G-TELP(레벨 2) 80~92점
		5점	-	TOEIC 921~990점 New TEPS 394~600점 TOEFL/IBT 108~120점 G-TELP(레벨 2) 93~99점
	러시아어	3점	-	TORFL 1단계 FLEX 2A, 2B
	※ 인정: TORFL, FLEX	5점	-	TORFL 2, 3, 4단계 FLEX 1A, 1B, 1C
추가우대	사회봉사 200시간	5점	-	관련증빙 제출
	해외봉사 3개월 이상	5점	-	관련증빙 제출
	오다(ODA) 전문가 자격증 취득자	5점	-	관련증빙 제출
	ODA교육원 교육 수료증 소지자	2점	-	관련증빙 제출

3 지원서 접수 및 전형안내

□ 지원서 접수

- 접수기간 : ~ 2025.1.5.(일) 23:59까지
- 접수방법 : 이메일 제출 (메일제목: NGO봉사단 지원_성명)
- 제출처 : kidcnngo@kidc.or.kr
- 제출서류
 1.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(붙임2 서식)
 2. 졸업(예정)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(재학생의 경우) 1부
 3. 해당 직종 경력증명서 (경력자)
 4. 해당 직종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부(소지자)
 5. 개인정보 수집/활용 동의서 (붙임3 서식)
 6. 봉사활동 확인서 (해당자)
 7. 병적증명서(남성 지원자)
 8. 사회적 취약계층 증빙서류 (해당자) (붙임3 서식)
 9. 질병·병력 및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(해당자) (붙임3 서식)
 10. 기타 지원서에 작성된 가산점 서류 일체

※ 희망 국가 및 기관은 희망하는 국가 순서로 총 2지망까지 (2개 국가, 2개 기관)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. (동일 국가로 2개 기관 선택 불가)

□ 전형 안내

- 1) 1차 전형 (서류심사)
 - 직종 적합성(전공, 경력, 자격증 등) 및 지원 자격(연령 등) 여부 점검
 - ※ 지원서 학력, 자격, 경력란에 기재 후, 제출한 증빙서류 사항만 인정
- 2) 2차 전형 (면접심사, 적합도검사)
 - (기술면접) 지원 업무에 대한 지식 점검
 - (일반면접) 봉사단 활동에 적합한 품성과 자질, 현지적응력 등 소양 평가
 - (적합도검사) 온라인 실시
 - ※ 해외거주자에 한하여 온라인인 면접 가능
- 3) 3차 전형 (신체검사, 신용조회)
 - (신체검사) 1차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, 필요 시 2차 검진 추가 진행
 - (신용조회) 신용 관련 결격사유 확인
 - ※ 2차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최종 심사를 실시하여 특이사항이 있는 자는 불합격 처리되며, 면접 결과와 직종 적합성을 고려하여 최종 국내 교육 대상자를 선발합니다.

4 선발일정

일정	일 정
12.30.(월)-1.5(일) 23:59	모집공고 및 지원서 접수
25.01.08.(수)	1차전형 합격자 발표
25.01.08.(수)~01.10.(금)	(온라인) 적합도검사
25.01.11.(토)	(오프라인) 면접전형
25.1.14.(화)	2차전형 합격자 발표 (개별 연락)
25.01.22.(수)-01.25.(토)	신용조회 및 신체검사 (1차) *25.02.06.결과확인
25.02.07.(금)-02.11.(화)	신체검사 재검(대상자에 한함) *25.02.17.결과확인
25.02.19.(수)	3차전형 합격자 발표 (개별 연락)
25.03.04.(화)-03.08.(토)	(오프라인) 국내교육
25.03.09.(일)-04.08.(화)	(온라인) 계약 및 국내 원격활동 시작
25.04.09.(수)	출국(과건)

*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시에는 별도 공지합니다.

* 모집 설명회는 zoom 실시간으로 개최되며, 추후 녹화영상 및 자료 업로드예정입니다.

* **국내교육은 집합교육(KOICA글로벌인재교육원_영월) 진행되며 필수 참석을 요합니다.**

5 증빙서류 제출

○ 지원서 내용 관련 증빙

증빙서류	증빙자료
학력증명서	○ 고등학교 이후 내용부터 기재 ○ 지원서 내 기재한 모든 학력에 대한 증명서 (졸업, 졸업예정, 재학증명)
경력증명서	○ 지원직종 관련 경력증명서(무급 경력 포함) ○ 국민건강보험공단 '자격득실확인서'로 대체 가능
면허증 및 자격증	○ 지원 직종 관련 자격증
봉사활동 확인서	○ 200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한함, 확인서 내 활동 시수 기재 필수 - 단, 해외봉사의 경우 해외체류기간 3개월 이상 확인 가능한 경우 200시간 이상으로 인정
병적증명서	○ 남성 지원자에 한함
가산점 증빙	○ 교육이수증은 기관명 및 직인/날인, 시수, 내용 등 표기되어야 인정 ○ 공인 어학증서 등 가산점에 해당되는 서류

○ 사회배려층 및 지역인재 제출증빙

사회배려층 구분	증빙자료
차상위계층	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(국민건강보험공단), 자활근로자확인서(행정복지센터), 장애수당대상자확인서(행정복지센터) 등
장애인	장애인증명서
저소득층 (국민기초생활수급자)	기초생활수급자확인서
다문화가족	국적취득증명서(국적취득시),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(부 또는 모, 해당자에 한함), 가족관계 증명서 등
한부모가족	한부모 가족증명서, 가족관계 증명서 등
6개월이상 장기실직자	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서, 구직등록확인서 등
여성가장	가족관계증명서, 가족관계등록부(배우자 없는 경우), 배우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(배우자 없는 경우, 해당자에 한함), 실종신고서(배우자 있는 경우), 장애인 등록증(배우자 있는 경우) 등
보훈보상대상자	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
국가유공자(자녀)	국가유공자(자녀)증명서
자립준비청년 (舊보호종료아동)	재원증명서, 보호종료확인서, 위탁가정/아동보육시설 재원증명서/보호종료확인서, 주민등록등본 등

※ 기관 발급서류의 경우, 발급기관명 및 직인/날인, 경력 기간, 발급일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함

※ 증빙서류가 지원서 상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허위로 판명되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

6 봉사단원 지원사항

○ 지원사항

구분	지원내용
국내활동비	○ 원격활동비 : 1개월 105만원 (세전)
출국시 지원	○ 출국준비금(1회) 500,000원, 항공료, 예방접종, 비자발급비 등
활동시 지원	○ 생활경비 : 현지생활비, 주거비 ○ 활동경비 : 활동물품 및 현장사업 협력활동비, 현지어 심화학습비 ○ 안전 및 건강관리 : 상해 및 재해보험, 긴급의료 지원 서비스 가입 ○ 기타지원 : 격려물품, 안전물품, 의약품물품
귀국시 지원	○ 국내 정착지원금 (월 60만원 적립), 귀국준비금, ○ 항공료, 화물택송료 ○ 귀국 검진비
국제개발협력 사업 재참여 지원	○ 임기만료 귀국 단원은 KOICA 신입직원 채용 시 가산점 부여 ○ 최종채용 확정시 봉사단 활동 기간 경력 인정

○ 국별 지원상한액 기준

구분	국내 원격활동비 (1회)	출국준비금 (1회)	생활비 (11개월)	주거비 (11개월)	귀국준 비금 (1회)	국내 정착지원금 (매월)
몽골	105만원	500,000 원	\$550	\$700 (울란바타르)	한달치 생활비	600,000 (중도귀국시, 할인을 적용)
우즈베키 스탄			\$700	\$600		
탄자니아			\$650	잔지바르 \$450 다레살람 \$650		

* KOICA 규정에 따르며, KOICA 규정 변동 시 상한액 변동 가능.

7 유의사항 (지원 전 반드시 확인)

□ 지원 전

구분	지원내용
지원서 작성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지망과 2지망의 국가는 중복되지 않도록 기입바랍니다. (예) 1지망 : 탄자니아, 2지망 : 우즈베키스탄 ○ 지원서 작성시 가산점 대상자는 증빙서류 제출시만 인정가능하며, 활동과 관계된 분야만 작성 바랍니다.
파견형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025-2026 NGO봉사단은 국내교육 수료 후 1개월 국내원격활동 후, 11개월간 협력국 활동 현장에 파견되는 형태입니다.
단신부임 원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단신으로 파견되어 활동하여야 하므로 국내 가족의 생계, 자녀들의 교육 문제 등을 신중히 검토한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.
신변정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업체 등에 소속된 지원자(공무원 포함)는 소속기관과 협의(소속 기관장의 사전승인)하여 최종 합격 후 국내 교육 전까지 개별적으로 신분 정리(퇴직, 휴직 등)를 진행해야 합니다. ○ 교육부훈령 제98호(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, 교육기관 등의 범위)에 의거, 교육공무원(지방공무원 포함)은 KOICA 해외봉사단으로 파견될 경우 연수휴직이 가능합니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다만, 휴직 처리는 해당 소속기관의 승인사항이므로, 모집 및 교육일정을 미리 확인하여, 해외봉사단에 선발될 경우 '연수휴직' 가능여부를 소속기관(시·도 교육청 및 소속 학교 등 관

	계기관)에 반드시 확인한 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.
중복지원 불가	○ 지원한 봉사단의 선발 전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, 동일한 위탁형 봉사단 (NGO봉사단, 청년중기봉사단 등)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. 선발전형진행 중 타 유형 봉사단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리 봉사단 지원의사를 철회해야 합니다. (지원서 접수 취소 신청, 면접 사전 포기 요청 등). ※ 단, KOICA 봉사단, 프로젝트 봉사단, KOICA 자문단 등은 지원 가능
선발일정	○ 전형별 일정은 개인 사정에 의해 조정이 불가합니다. 개인 일정을 충분히 고려하신 후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.

□ 최종 결과 발표 시

구분	지원내용
국가배정	○ 최종 국가 및 파견 NGO기관 배정은 지원자의 자격요건 및 활동 전문성과 협력국의 요청 내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, 국내 교육 참여 전 최종 확정됩니다.
국내교육 (온/오프라인)	○ 국내교육은 온/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이며, 교육 시점의 기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 ○ 국내 교육 시작 후 정해진 기간 내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만 해외봉사단 자격을 부여받으며, 파견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. ○ 국가 배정 후 합격자의 개인 사정에 따른 연기는 불가하며, 국내교육 미 실시자는 파견 포기로 처리됨을 유념 바랍니다. ○ 교육 시작일부터 출국 시점까지의 모든 일정은 개인 사유에 의해 변경또는 조정될 수 없습니다.
백신접종	○ 파견전 예방접종(국가별상이)은 필수 접종으로 미 접종시 파견이 불가능 합니다. ○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에 따라 65세 이상 연장자 및 12~64세 면역저하자·감염취약시설 구성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고하며, 파견 국가별 출국 요건에 따라

	추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필수 요구될 수 있습니다.
기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내교육 대상자 발표 이후라도, 병력(病歷)을 숨기거나 지원서 허위 기재, 증명서 위조 등이 확인된 경우, 또는 증빙서류를 미제출한 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. ○ 활동기간은 기본 1년이며, 계약 기간 만료 전 중도 계약 해지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※ 자세한 내용은 KOICA 홈페이지(www.koica.go.kr)에서 ‘해외봉사단파견 규정’ 및 ‘해외봉사단파견 규정 시행세칙’을 참고 바랍니다.

7 문의처

- 홈페이지 : kidc.or.kr (채널톡 실시간 질의응답)
- 대표메일 : kidcngo@kidc.or.kr
- 전 화 : 070-4916-3606, 3610, 3601
- 상담시간 : 월요일~금요일(공휴일 휴무), 10시~16시

- 파견단원 모집 온라인 설명회
 - 일시 : 2024. 12. 20.(금) 12:30
 - 설명회 신청하기 : <https://forms.gle/GUxwV3sduj94nEjs7>
 - 설명회 Zoom 링크 : <https://us06web.zoom.us/j/83724594341?pwd=NDanHA0j9MUNQDD5OnII FM4Zv1jr1l.1> (회의 ID: : 837 2459 4341, 암호: 283248)

<참고>

사회적 취약계층 준용 관련법 및 제출 서류 안내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해당하는 자

관련법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“수급권자” 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“차상위계층”
제출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수급권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 1부(주민자치센터 발급) 2. 차상위계층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(국민건강보험공단), 자활근로자확인서(주민자치센터), 장애수당대상자확인서(주민자치센터) 중 1부

2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해당하는 자

관련법	<p>제2조(장애인의 정의 등)</p> <p>① “장애인”이란 신체적·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.</p> <p>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“신체적 장애”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,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. 2. “정신적 장애”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.
제출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장애인증명서 1부(주민자치센터 발급)

3.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에 해당하는 자

관련법	<p>제4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“모” 또는 “부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(遺棄)된 자 나.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다. 미혼자{ 사실혼(事實婚)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} 라.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2. “한부모가족”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. 3. “모자가족”이란 모가 세대주{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(世代員)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}인 가족을 말한다. 4. “부자가족”이란 부가 세대주{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}인 가족을 말한다. 5. “아동”이란 18세 미만(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)의 자를 말한다.
제출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한부모 가족 증명서 1부 2. 가족관계증명서 1부

4. “다문화가족지원법”에 해당하는 자

관련법	<p>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"다문화가족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.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「국적법」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. 「국적법」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. "결혼이민자등"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. 「국적법」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. "아동·청소년"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.
제출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국적취득증명서 1부 (국적 취득시) 2.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1부 (부 또는 모, 해당자에 한함) 3. 가족관계증명서 1부

5. 고용노동부 「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」에 따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

관련법	<p>실직자 창업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조 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"장기실업자"란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었던 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후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를 말한다.
제출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구직등록확인서 2.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서

6.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“취업취약계층” 중 여성가장에 해당하는 자

구 분	첨 부 서 류	
배우자 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가족관계등록부 •부모가 근로능력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(해당자에 한) 	
배우자 有	가출.행방불명	실종신고서
	장애	장애인등록증, 국가유공자증명서, 장애급여지급통지서 중 1부
	질병	의사의 진단서
	군복무	복무확인서
	학교 재학	재학증명서
	교도소 입소	수용증명서, 형 확정판결문
	구직 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배우자	직업안정기관(고용센터)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
	이혼소송 제기	이혼소송확인서
	기타 가족 생계 부양	통.반장의 확인서(검토)

7. “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”에 해당하는 자

관련법	<p>제33조(취업지원 대상자 등)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(이하 "취업지원 대상자"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2.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3.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 <p>②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37조 및 제41조에 따른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제37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41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.</p>
제출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

8. 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”에 해당하는 자

관련법	<p>제29조(취업지원 대상자 등)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(이하 "취업지원 대상자"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재일학도의용군인, 4·19혁명부상자, 4·19혁명공로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.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·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.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.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·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5.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<p>②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실시할 경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명에게만 실시한다.</p> <p>③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제32조제2항에 따라 채용되는 횟수와 제34조에 따라 고용되는 횟수를 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이내에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.</p>
제출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국가유공자(자녀) 증명서

9. “아동복지법”에 해당하는 자

<p>관련법</p>	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5. "아동복지시설"이라 함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. 제14조(아동복지시설의 설치)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 ③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</p>
<p>제출서류</p>	<p>1. 위탁 가정 및 아동보육시설 재원증명서 또는 보호종료확인서 중 1부 2. 주민등록등본 1부</p>